

2021년도 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1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반성장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LH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명) 2021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최대 기간으로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유형 1(기초형_신규구축), 유형 2(소기업 대상_기초수준)
- (지원규모) 총 12개사, 총 사업비 7.2억원

구분	지원규모(기업당)				지원기업수	사업비	비고
	LH	정부	중소기업	합계			
유형 1	0.4억원	0.3억원	0.3억원	1.0억원	6개사	6억원	중소기업
유형 2	0.1억원	0.1억원	-	0.2억원	6개사	1.2억원	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별표 1. 스마트공장 구축 세부 지원내용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LH 인증 신기술 공모(신자재 분야) 선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별표 2. 소기업 규모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금년도에 他 기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기초·고도화1·고도화2,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금년도에 LH 산업혁신운동 및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예정) 기업

- 과거('18 ~ '20년) 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대중소 상생형, 신규구축 및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1. 7. 1.(목) ~ 7. 15.(목) 16:00까지

□ (신청방법) 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

①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상생누리 회원가입,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사업명) 검색 → 참여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② 접수서류 제출

접수처	- 이메일 : jyoh@lh.or.kr - 우 편 : 52852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동반성장처 오주연
-----	---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이내 PDF파일로 상생누리 신청과 이메일 제출 완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식 참조

1. 사업참여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2020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1부
6. 자체진단표(서식 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각 1부
7. 기업현황, 사업계획 관련 기타 설명(증빙)자료 각 1부

□ (선정방법) 서면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별표 3. 신청기업 선정 평가기준

4. 사업 추진절차



- * 사업정보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 * 협업기관은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임

5. 기타사항

- 도입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여 철회 및 중도 포기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시점에서 정부기준에 따라 수준확인 필수
- 도입기업 임직원은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의무 수료
- ※ 본 사업은 LH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및 확인

- (사업문의) LH 동반성장처 오주연 차장(☎ 055-922-4714, jyoh@lh.or.kr)
- (사업홍보) 중기중앙회 이준혁 부부장(☎ 02-2124-4311, 23nol@kbiz.or.kr)
한국생산성본부 유종관 책임(☎ 02-724-1204, jkryu@kpc.or.kr)
- (사업안내) LH 홈페이지(www.lh.or.kr)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